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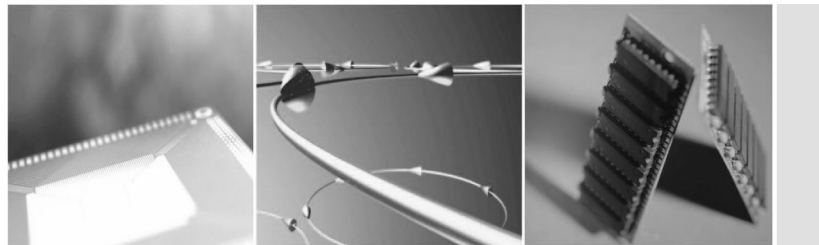
KISDI 이슈리포트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BcN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

2005. 1. 24

주지홍 · 강홍렬 · 양인애

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요약

I | 통신시장 환경변화

II | 문제점

III | BcN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

IV | 시사점

주지홍

- jjoo@dju.ac.kr
-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석사, 박사
- 미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석사(LL.M.)
- 미 U. C. Berkely School of Law, Fulbright Visiting Schola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현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홍렬

- hongyol@kisdi.re.kr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미 Columbia University 경제학 석사, 박사
- 미 U.C. Irvine CRITO 객원연구원(2001. 3.~2002. 2)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미래연구실 실장

양인애

- inaeya@kisdi.re.kr
- 한양대학교 법학과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 본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요 약

전기통신, 방송, 인터넷 등 IT주요 요소들이 90년대 이전까지는 각 영역별로 독자적으로 발전하여왔고, 이에 따라 각 영역별 규제내용 및 정책지원사항이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정된 정보통신 관련 법규정도 별개의 영역에서 각 영역에 맞는 특수성을 지니게 되었다.

예컨대 통신법 영역에서는 서비스 사업자의 분류 및 허가제도, 경쟁촉진방안 등이 그 주요 대상이 되었고,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공정성, 방송사업자의 허가, 방송위원회 등을 규율하고 있다. 한편 정보화 및 인터넷영역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망법 등을 중심으로 각종 정보화 촉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추진체계, 국가사회정보화촉진, 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정보화촉진기금, 네트워크구축,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IT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각 영역별 구분이 모호해 지고,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서비스 및 혼합성격의 서비스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융합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융합서비스는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BcN 구축이 단순히 IT기술의 융합의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서비스개발을 통한 성공적인 새로운 시장 개발 및 관련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역별 분리를 전제로 하여 제정된 규제 및 법제도를 개정하여, 시의적절한 규제 및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BcN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정논의가 총론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각론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법제도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시장변화에 따른 BcN 관련 법제도 정비방향 및 각 개별법상 BcN 구축 및 활용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I. 통신시장 환경변화

1. 특정서비스, 특정네트워크, 특정사업자

- 그 동안 정보통신시장에서는 각각의 서비스마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 서비스 제공에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음¹⁾
 - 케이블사업자들은 다채널 비디오방송을 제공하고, 통신회사들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사람대 사람의 음성통신서비스제공이나 동일한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통신서비스 제공)

- 규제제도의 틀
 - 이와 같이 특정 서비스와 그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network가 결합되어 다른 서비스와 엄격히 구별된다는 전제하에, 각종 규제제도의 틀도 이에 맞추어 제정됨

2. 동일 시장에 다른 사업자간의 경쟁 치열

- 그러나 IT기술 발달에 따라, 종전에는 직접적인 경쟁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들끼리 경쟁상대가 되는 상황이 초래됨²⁾
 - 가장 대표적인 예가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가 그 예로서, DSL 제품을 가진 통신회사와 케이블모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 회사가 경쟁관계에 있음
 - 이러한 경쟁관계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시장이 개척됨에 따라,

1) 35 Comm. L. Rev. 793.

2) Julia K. Tanner & Robert S. Tanner,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Developments and Projections, 18 ACCA DOCKET, July/Aug. 2002, at 52.

전화시장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음
 - 다채널 비디어 방송 시장에서, 케이블 회사와 위성방송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디지털방송을 준비중인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TV 재송신이 가능해진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올해 유료방송 시장을 놓고 가입자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전체 약 1,700만 가구 중 케이블TV 가입자는 중계유선방송(RO)과의 협업을 포함해 약 1,250만명이며,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165만명임
 - 유료방송 총 가입자가 이미 1,500만명에 달하고 있어서, 전체 1,600만 가구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므로, 두 경쟁 매체가 가입자 확대를 위해 상대 매체의 가입자를 뺏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³⁾

3. 융합현상 발생

- 디지털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 영역별 구별이 엄격하였던, 통신, 방송, 인터넷 등 각 분야의 구별이 모호해 지고, IT network, 사업자,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융합(convergence)현상이 일어남
 - 전통적으로 방송사업자로 여겨지던 케이블 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사업에도 진출하려고 함, 반면에 통신사업자들은 VOD(Video On Demand), DMB(digital media broadcasting)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함

3) 지난 2002년 개국 이후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한 스카이라이프는 올해 지상파TV 재송신까지 가능해져 일단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반면에, 반면 케이블TV는 기존의 가입자 이탈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입장일 뿐 아니라 시청료증가를 수반하는 디지털 케이블TV로 전환까지 유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

- 융합은 기술 뿐만 아니라 시장, 서비스, 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임
 - 융합개념도입에 따라 새로운 규제들에 대한 연구 및 대책 필요
 - 정책입안 및 신서비스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 정비 없이는 BcN 시장 형성 및 활성화 곤란

4. BcN 시범사업

-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융합현상에 맞추어 차세대 통합네트워크인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이하 BcN)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중에 있음
 - 광대역통합망(BcN)은 음성·데이터·방송·통신 등이 융합된 품질 보장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광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임
 - 현재 정부가 법·제도 정비와 기반기술 연구 등 BcN 구축 여건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효율적인 상용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서두르고 있음
- 이를 위해 지난해 유비쿼터스 코리아 망으로 주목받는 '광대역통합망(BcN)' 1단계 시범사업 추진하기 위해 KT, SK텔레콤, 데이콤등 3개 컨소시엄을 선정했음⁴⁾
 - KT의 옥타브컨소시엄은 오는 8월부터 서울, 대전, 광주 등에 600가구를 대상으로 BcN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VoIP, 고품질 영상 통화는 물론 유·무선 영상통화 연동서비스, T커머스, TV폴 등 TV를 디스플레이로 삼는 서비스를 계획중임
 - SK텔레콤 유비넷컨소시엄도 7월부터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지에서 400가구를 대상으로 VoIP, 고품질 영상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WCDMA

4) 이영로, "BcN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 TTA 저널, 제96호, 50면.

영상전화 연동서비스, 지상파 디지털방송, 케이블 디지털방송, IPTV, 주문형비디오(VOD),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T거번먼트, TV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임

- 데이콤의 광개토킨소시업도 7월부터 서울, 경기, 부산 등지의 300가구를 대상으로 통신방송 융합 분야에서 고품질 주문형비디오(VOD), 양방향 데이터 방송, 디지털TV 기반의 TV포털,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특히 킨소시업에 참가한 SO들을 규합, 케이블망(HFC)을 통합 통신·방송융합서비스로 구현할 계획임

- 정부는 BcN을 통해 2010년까지 유무선 가입자 2,000만명, 약 67조원의 민간투자자와 관련 장비 및 서비스 생산액 95조원, 135억달러의 수출, 37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BcN망 유무선 가입자 규모는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⁵⁾

5) 전자신문, 2005. 1. 1.

II. 문제점

1.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들

- 현재 각종 규제 및 법제도는 과거 영역별 구분이 확실하던 시대에 제정되어진 것임
 -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이러한 규제들이 적합하지 않게 됨
- IT수요가 정체된 현 시점에 있어서, IT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수요를 개척해 나가는 것임
 - 그러나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개발하여 판매하려고 할 때, 기존의 어느 분류에도 속하지 않아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어느 곳에 등록을 해야 할지 몰라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과거의 규제들에 근거하여 불법이 되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시장변화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규제들을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음
- 반면에 새로운 규제들을 만들 경우에는, 발전초기에 있는 융합서비스 관련 IT 산업발전을 저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대로 옛 규제들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음
- 그러나 결합상품이나 기존의 영역에 속하기 어려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비 개방적인 현재의 법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제도나 법규정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부정적인 역할을 초래하게 됨
 -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그리고 방송을 결합한 묶음상품인 트리플플레이 서비스(TPS)에 대해 통신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나, 관련 법이 결합상품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해,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의 제휴가 어려움⁶⁾

- 위성 DMB가 2004년 초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DMB 단말기 개발에 나선 회사는 단말기 개발을 완료하였지만, 정책지연 등으로 서비스 일정이 늦춰지면서 단말기를 판매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됨

2. 반경쟁행위 규제의 전제상황 변화

-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IT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매우 격심한 경쟁시장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규제나 관련 법규정이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관로개설을 위해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러한 수단이 경쟁 저하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가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관로개설 및 유지에 대한 비용지출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음⁷⁾
-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의 경쟁상황은 규제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됨
 - 예컨대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의 상호접속 가격산정에 있어서 각각의 사업자는 다른 규제들에 의해 지배받게 됨
 - 무선대 유선간의 상호접속의 경우, 두개의 서비스가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이므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됨⁸⁾
 - 반면에 유선대 유선간의 상호접속의 경우, 동일한 시장에서의 유선사업자는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방이 타방을 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상호접속료를 높게 산정하는 등 경쟁축진을 저해하는 방법을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됨

6) TPS, 통신사업자 vs MSO 동상이몽, 전자신문, 2004. 12. 10.

7) 35 Comm. L. Rev. 813.

8) 47 U.S.C. §332 (2000).

- 그러나 규제정도에 있어서 차별을 두도록 하는 이러한 전제는, 동일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유무선사업자가 함께 경쟁하게 되는 현재 상태를 고려해 볼 때 타당하지 않게 됨
- 오히려 유선사업자만의 경쟁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굳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 또한 유선사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무선사업자가 강력한 경쟁자가 되므로, 상호접속료산정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외국의 통방융합 추세 및 우리나라 규제기관의 2원화

- BcN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NGN(Next Generation Network)이 있음
 - 1993년에 논의가 시작된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는 기존의 전기통신망에 컴퓨터, 정보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이 융합되는 현상을 언급하였고, 그 후 NGN으로 발전됨
 - ITU가 주도한 NGN 추진전략에서는 circuit이 아닌 packet 기반의 전달을 기본으로 하고, 네트워크와 서비스 기능의 분리, 서비스품질과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광대역 네트워크, 이동성의 보장, 유무선망의 통합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짐
 - 2002년 우리나라에서 NGN 용어가 사용되다가, 2003년 NGcN 용어를 과도기적으로 사용한 후, 현재 유무선 통신통합은 물론 통신방송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BcN으로 정책용어를 바꾸고, IT839전략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⁹⁾
 - 특히 정통부는 BcN 개념 재정립을 통해 기존 유무선망 통합 외에 차세대 가입자망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광동축혼합(HFC)망 기반의 통신·방송 융합

9) 한국법제연구원,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법령 체계정비방안 연구, 2004, 222면 참조.

서비스를 기본안에 정식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 IT기술발전에 따른 시장환경변화에 주목하고, 선진 외국들은 통방융합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규제기관들을 통합하고 있음¹⁰⁾

- 구체적으로 통방융합 및 차세대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음
- 과거 엄격히 구별되었던 통신·방송 시장간 상호 진입 허용
- 사업자가 기존 시장을 넘어서서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허용
- 성격이 다른 사업자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함

○ 미국

- 1996년 통신법 개정을 통해 통신과 방송의 상호진입을 허용함
- 통신사업자에 대한 방송사업 신규허가는 케이블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허가함
- 통신과 방송의 규제기관이 연방통신위원회(FCC)로 통합되어 있음

○ 영국

- 1984년 방송사업자가 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
- 1996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위한 사업자 허가 근거규정을 마련
- 2003년 통신방송통합법(Communicaitons Act)을 제정하면서 통신사업자의 방송서비스를 허용함
- 현재 이와같은 법규 개정으로 통신방송 상호진입 허용되고 있음
- 통신과 방송의 규제기관은 OFCOM으로 통합되어 있음

10) 김성철, BcN 관련 법제도 제정방향 및 비즈니스 모델, TTA 저널, 제96호, 61~62면 참조.

- 일본
 - 우리나라와 같이 방송법과 통신법이 분리되어 있음
 - 198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TV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 진입을 허용함
 - 2002년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제정하여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을 허가
 - 규제기관은 총무성이 통합하여 관할
- 우리나라
 - 통신법, 방송법이 분리되어 있고,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세계적 추세는 통신과 방송 두가지 영역을 모두 통합하여 규제하는 단일규제기관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은 방송위원회가, 통신은 통신위원회가 규제하는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융합서비스 관련하여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뉴미디어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정통부의 경우 방송위원회의 반발로 인해 정보통신관련법 개정을 통한 융합서비스의 근거규정 마련이 쉽지 않음¹¹⁾

4. 전략적 제휴 잘 되지 않음

- cable 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갈등
 - 정부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위한 BcN 구축시범사업에 방송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배제되자, SO는 독자적인 BcN 사업추진을 할 것이라고 발표함
 - 방송위원회에서도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이 가시화되고, 그동안 SO와 협력

11) 전자신문 2003. 8. 1. 사설, "광대역통합망 구축 의미".

해은 파워콤까지 소매업에 진출한다면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

○ 통신과 방송의 상호진입 허용

- 외국의 경우, 통신과 방송의 교차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통신사업자의 교차진입이 방송사업자보다 다소 늦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대부분 상호 진출이 허용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서비스로 IP-TV를 제공하면 시장 진입은 물론 서비스 권역·내용·겸영 규제 등에서 SO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함
- 반면 SO들은 전국 77개 구역에서 20%를 초과해 겸영할 수 없으며, 채널운용과 내용도 심의 받는 등 규제가 엄함
- 형평성 측면에서도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 왜냐하면 SO는 방송망으로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전화(VoIP)를 서비스하면서, 통신사업자가 IP-TV를 못하게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
- 따라서 장기적으로 통신과 방송의 상호진입을 완전히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기적으로는 SO에 대한 겸영규제 완화를 통해 적정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함

Ⅲ. BcN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

1. 단기적 방향

- 통방융합서비스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유도
 - BcN 사업에 대해 투자자금 부족 및 장비사업자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BcN 서비스 수익모델 부재 및 안정적 수요확보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임
 - 과거 1990년 우리나라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는, 정보의 국가망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선도수요를 창출하여, 어느정도 확실한 수요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지만, BcN의 경우 이러한 선도수요가 부재함
 - 그렇다면 서비스 수익모델을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조속히 상용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즉 killing application의 상용화 지원을 통해 투자의 선순환구조 달성이 필수적임¹²⁾
 - killing application model에 대해서는 VoIP라던가 VOD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MPEG-1에서 CDi가 뜰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였듯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BcN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가 예측되는 수익모델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WTO 협정위반우려에 대해서는, 신기술지원의 경우에 특정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지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 이종사업자간 전략적 협력 증진 및 M&A 활성화 촉진
 - 케이블 사업자의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입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공정경쟁 유도

12) 김원식, 차세대광대역통합망 계획에 대한 기대와, KISDI 칼럼, 2004. 2. 24.

- 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간의 전략적 유대가 상호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힘들 경우에는, M&A를 통해 새로운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synergy 효과를 도모하고, 기술융합을 시장융합 및 서비스 융합차원으로 유도함
- 새로운 서비스 및 결합상품 규제제도 개선
 - 현재 통신시장에서는 경쟁 제한성이 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기존의 개별 영역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규제들이 통합환경이라 할 수 있는 BcN 환경구축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융합환경에서는 각 서비스별 경쟁제한성 여부를 기준으로 새로운 규제들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융합서비스라 할 수 있는 결합상품에 대해, 공정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신서비스개발 및 새로운 시장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 미침
- 망구축 중복투자 방지 및 투자 촉진
 - 1990년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전제로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개정하여 BcN구축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전기통신기본법 제18조 4항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자간의 의견불일치로 공동구축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신위원회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따르도록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
 - 특히 광대역통합망구축에 따라 중계기 설치장소 확보가 각 사업자들에게 중요 애로사항으로 부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구축의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사유지 및 공유지에 구축시 사용대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통신위원회에 가격조정을

위임하고 합리적인 사용대금을 도출하도록 함

-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18조 제6항의 경우에, 협조요청의 대상자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짓고 있는데, 개인도 이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협의에 응할 의무만 부여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통신위원회가 중재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당사자들이 구속되도록 함
(단,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대한 중재위임에 있어서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함)

○ 품질보장형 광대역멀티미디어 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책 강구

- 근거법령 마련하여, 품질보장형 BcN 관련상품 개발 및 판매 지원
- 품질기준, 요금 및 SLA 협약의 법적 근거 마련
- BcN 콘텐츠 규제방안 및 지적재산권, 사생활보호 방안 마련
- BcN 구축을 위한 설비투자,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 조세지원,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실효성 마련
- 기술적 기준은 자율적인 거래표준약관 사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율
- 분쟁조정 절차 및 부당한 면책규정 규제
- BcN 관련 표준화 추진 방안 마련 및 관련 법제 정비
- 이종의 망간의 상호접속 및 요금정산, 주파수 관리, 주소자원관리 등 주요 BcN 관련 정책마련

2. 중장기적 방향

○ 규제기관 통합(시장지원, 촉진형규제)

-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통신·방송 융합이 진전되면서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규제기구를 통합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정책기능은 방송위원회가 담당하지만, 주파수 배분 및

- 기술기준 고시 등 기술정책기능은 정통부가 담당하고 있어 규제기구가 이원화 되어 있음
 - 또한 방송사업자 허가시에도 허가추천은 방송위원회가, 무선국 허가는 정통부가 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음
 - 통방융합 기술 및 시장변화를 제도권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 사업자와 서비스 재 분류
- 음성위주의 통신망 상호접속제도를 음성·데이터·방송 등 이종망간 상호접속제도로 개선
 - 사업자 분류를 content중심으로 하여, 전송·방송·정보 서비스로 단순화 시킴
 - BcN 환경에 대비하여, IT관련법(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방송법, 지적소유권관련법 등)의 정비 및 통합법 수립에 대한 정책방향 마련
 - BcN 사업자 및 서비스 분류방법,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방안, 주파수 관리방안 등 BcN 서비스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 변경요소 대비
 - 예컨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과거 미미하였던 별정통신사업 영역이 매우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간통신망 보유 유무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분류하는 기존의 사업자분류방법을 개선하고, 새롭게 통신사업자의 분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역할 변화 및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의 통합
- 과거 정부의 역할이 통신 및 방송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장에서의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원 및 간접적 감시로 역할 재정립
 - 이원적 분류방법에 따라, 중간영역의 서비스 및 융합서비스의 경우에는 관할권이 문제되어 신서비스개발 및 산업육성에 지장을 가져옴
 - 외국의 추세와 같이 통신과 방송을 통합하여 단일의 규제기관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규제철학과 논리가 상이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단기적으로 통합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이미 출현하였거나 가까운 시기에 출시 가능한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독일에서의 제3의 멀티미디어법 제정과 같이 우선적으로 제3의 법을 제정함으로써, 융합서비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함¹³⁾

- 장기적으로는 계층적 구조개념을 차세대 규제제도의 기본개념에 적용
 - 미래에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
 - 따라서 인터넷이 갖는 계층적 구조의 개념을 차세대 규제제도의 기본개념에 적용하여 인터넷중심의 정보통신시대에 적합한 규제의 틀 마련
 - 규제의 대상을 접속(access) 서비스, 전달(transport)서비스, 응용(application) 서비스, 콘텐츠(content)서비스의 4개 계층으로 구별하고, 계층별로 서비스 제공자들을 시장 지배력에 따라 일관성 있게 규제함¹⁴⁾

3. 구체적인 법규정 개정방향

1) 서비스 결합판매(bundling)

○ 결합판매의 의미

- 끼워팔기(tie-in sale, tie-in contract) 또는 결합판매(tying arrangement)는 거래강제의 구체적인 유형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임

13) 김원식 외, "유럽주요국의 통신방송융합 대응사례 분석", KISDI 이슈리포트, 2004. 4. 6, 44면.

14) 경상현, "정보통신 규제정책의 새 틀", 전자신문, 2004. 11. 15. 참조.

-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사업자가 판매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부당하게 끼워 파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됨
- 끼워팔기의 형태로서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인기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비인기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형태임
- 이러한 유형의 거래강제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이유로는
 - i) 끼워팔기는 주상품(tying product)과 함께 끼워팔리는 종상품(tied product)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고객의 상품·서비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매방법이기 때문
 - ii) 끼워팔기가 신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거나 판매가 부진한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가격·품질 등을 중심으로 하는 효율성 경쟁에 반함
 - iii) 특정상품만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그가 필요로 하지 않는 다른 상품을 끼워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상품에 관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¹⁵⁾
- 결합판매 법규정
 - 2002. 12. 26.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금지행위) 개정에 따라, 결합판매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¹⁶⁾
 - 2004. 3. 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¹⁷⁾하여,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5) 권재열, 경제법, 법원사, 2001, 216면.

16) 제36조의3(금지행위)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12.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26>

17) 제10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3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전기통신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을 별표에 명시하고,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결합판매에 대한 특례로는, 부칙 ②에 “별표 1 IV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3년이 경과되는 날(2007년 3월 9일)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
- 별표에 명시된 금지행위의 유형 중 결합판매에 관한 내용을 VI-6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그 이유로 하고 있음¹⁸⁾

○ 시행령개정의 의미

-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함
-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 심사에 따라 금지여부를 결정함
- 입증책임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통신위원회로 전환됨
- 시행령개정은 위와 같이 사업자를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법적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이용자의 이익저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합판매가 곧바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증대 효과 및 시장지배력변화 등 각종 공정경쟁을 저해할 만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본조신설 2004.3.9]

18) 6. 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전기통신역무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저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변화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결합판매 유사 제공사례
 - 예컨대 KT의 결합판매 유사 제공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가) 네스팟 스윙 [무선랜초고속인터넷(메가패스) + PCS 이동전화]
 - a) 신규단말기 개발하여 메가패스 부가상품으로 출시
 - b) 기존의 메가패스 및 이동전화(KTF) 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자간 협력함
 - 나) 원폰 [시내전화 + PCS 이동전화]
 - a) 신규단말기를 개발 제공하여 메가패스 이용자의 부가서비스로 제공
 - b) 인가역무에 대한 최초결합서비스 형태
 - c)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 약관은 그대로 유지하되, 할인율에 대한 부분을 각 약관에 반영함
 - 다) 스카이라이프 번들 [초고속인터넷 + 위성방송]
 - a) 단순한 상품결합(Tying)으로서, 별개 영업조직에서 5% 할인율 적용
 - b) KT(한국통신) - KDB(한국디지털위성방송)간 공정경쟁 등 약속서류를 약관 신고서류에 첨부
 - 이러한 결합판매 유사 제공사례는 진정한 의미의 융합서비스라기 보다는, 산술적 의미의 단순결합에 상품판매촉진을 위해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임
 -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법적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시내전화 등 인가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상황은 여전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즉, 결합판매에 있어서 결합상품에 대한 새로운 약관작성이 곤란하고 별도의 약관을 단순히 중복적용하는 형태라, 회원관리유지비용 등 비용감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 단일약관 작성 문제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등을 규제하기 위해 결합판매 관련 규제규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타경쟁자를 배제하고 시장에서의 끼워팔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단일 약관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다만 비용감소를 통한 상품가격 인하 및 사용자편익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단일약관작성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짐
- 따라서 이러한 결합판매의 경우에 단일 약관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사후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심사에 따라 금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끼워팔기 규제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단일약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아닌 통신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함
- 규제목적 회피여부를 입증함에 있어서, 단일약관에 따른 결합상품 판매 후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결합상품을 별개로 구입가능한지 여부, 서비스별 시장지배력 등이 중요 고려요소가 될 것임

○ 결합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 또한 현재 방송법에 의한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규제 등으로 인해, 단순히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물리적 서비스 결합형태가 있을 뿐, 통신사업자의 단일 약관에 의한 진정한 결합 서비스는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통신사업에의 진출을 허용한 것과의 공정성 견지에서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에의 진출을 허용하고, 통신사업자의 DMB서비스에 대해서도 결합서비스 약관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BcN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융합서비스 규제 여부

- BcN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 판매되는 상품이 이러한 결합판매규제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하나로서 결합판매규제 대상 외의 것인지가 불분명함
- 지금까지의 기간 전송망은 음성, 데이터, 방송 등 사용목적에 따라 구간별

로 별도로 구축해 사용했으나, BcN망은 이들 망이 하나의 통합망으로 단순화되며, 연내 실질적인 BcN(광대역통합망)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망운용 방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임

- 그렇다면 개별망이 아닌 통합망을 통해 서비스가 융합되어 제공된다면, 서비스유형별로 구분해 규제하기 보다는 융합상품 내지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좀더 유연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독점규제적 접근시각에서는 기술적으로 분리 가능하다면 융합상품이 아닌 결합상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특히 BcN 구축초기에는 BcN 조기구축 및 BcN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적 접근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음

○ 현상황

- 현재 기간망을 차세대통합망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며, KT는 올해 1월 대구를 시작으로 연내에 서울 및 부산 지역에 BcN을 구축하고, 2006년에는 수도권, 2008년에는 전국 주요도시의 전송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임
- 따라서 BcN 융합서비스 개발을 통한 관련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규정의 유연한 적용 및 해석이 필요함

○ BcN 결합서비스 예상 형태

- 가. BcN 음성서비스(시내전화) + 초고속인터넷(메가패스)
- 나. BcN 음성서비스(시내전화) + 휴대인터넷(WiBro)
- 다. BcN 영상전화 + 이동전화 영상전화
- 라. 초고속인터넷/휴대인터넷 + IP-TV
- 마. BcN 음성서비스(시내전화) + 초고속인터넷/휴대인터넷 + IP-TV
- 위에서 보았듯이 BcN 결합서비스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 과연 결합서비스이므로 규제의 대상이 되고, 특히 사업자가 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BcN 구축과는 관련 없이 무조건 개별로 구별하여 판매해야 하는지가 문제됨

○ 결합판매 규제의 전제조건

– 결합판매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O'Connor 판사가 규제대상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세가지 사항을 명시하였음¹⁹⁾

가) 매도인은 결합상품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일 것

나) 결합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결합상품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가 되리라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가 있어야 할 것(다른 많은 사업자가 결합상품시장에 존재하고 있으며 결합판매에 의해 이들이 축출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또는 결합상품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서 쉽사리 다른 사업자들도 이와 유사한 결합상품을 판매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상기 요건상의 실질적인 우려가 없다고 보아진다)

다) 결합상품이 각각 별개의 것으로 여겨지기 위한 확실한 경제적 이유가 있어야 함(예컨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상품들이 별개의 것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부 소비자들이 다른 결합상품을 구입하지 않고 별개로 구입하기를 원해야 한다)

–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에 독점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합판매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단일 제품이나 단일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구성요소들을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되지 않음²⁰⁾

19) Jefferson Parish Hospital District No. 2 v. Hyde, 466 U.S. 2, 37-39(1984), (O'Connor 판사는 다수 의견에 동조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사례로 Eastman Kodak Co. v. Image Technical Servs., Inc., 504 U.S. 451, 461(1992).

20) Fortner Enters., 394 U.S. at 507; Multistate Legal Studies, Inc. v. Harcourt Brace Jovanovich Legal & Prof. Publications, Inc., 63 F.3d 1540, 1546-1547(10th Cir. 1995), cert. denied, 516 U.S. 1044 (1996).

- 이러한 점은 지금까지 종종 간과되어 왔으나, 특히 시장간의 경계가 불투명한 통신사업의 경우에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²¹⁾

○ 문제점

-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시내전화를 포함하여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약을 받고 있음(BcN 음성서비스는 VoIP와는 달리 PSTN이 IP화된 고품질 시내전화 서비스임)
- BcN 영상전화에 대한 역무가 정확하게 분류·지정되지 않아 유무선간 영상연동서비스 제공이 제약받음(BcN 영상은 VoIP의 부가서비스형태인 영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고품질 프리미엄 형태이므로, 별도의 기간역무로 지정하여 번호부여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방송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을 이용한 Triple Play Service(전화 + 인터넷 + 방송) 등 BcN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향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부장관의 세부기준 고시에 결합서비스에 대한 사후규제 완화
-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신시장에서의 서비스간 경계가 불분명한 특성을 감안하여, 끼워팔기 규제 대상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합판매를 허용
- 다만 결합판매를 통한 규제회피 목적 달성 및 경쟁사업자 축출을 위한 부당거래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사후 규제하도록 함
- 미래 필수 불가결하게 제공하게 될 BcN 통방융합서비스를 위해 통신사업

21) P. Huber, M. Kellog, & J. Thorne, The Geodesic Network II: 1993 Report on Competition in the Telephone Industry ch. 1(1993).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147 F.3d 935, 949-950(D.C. Cir. 1998).

자가 자가통신망을 이용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 법이나 방송법을 개정하거나 제3의 법을 제정하여 허용토록 함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선정기준 관련

- 현재 역무별 지배적 사업자의 선정방식은 미리 일정한 역무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시장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의 사업자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관련시장과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고정함에 따라 시장간의 통합을 그 특징으로 하는 BcN환경 하에서는 적절하지 못함
 - 즉, 현재에는 음성전화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 먼저 유선음성시장과 무선음성시장으로 구분 후 이를 다시 시내·시외·국제 전화시장으로 구분하여 경쟁상황을 평가하였음
- 유무선통합 등 시장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통합되는 BcN 환경하에서는 사전에 관련시장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관련시장을 구분하고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됨²²⁾
- 독일의 개정통신법²³⁾에서도 통신시장을 미리 역무별로 고정해 놓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마다 규제당국이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관련시장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독일 통신법 제10조 제1항)
 - 이러한 경우 통신규제당국이 연방카르텔청과 공조하여 시장확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123조 제1항)
 - 연방카르텔청과 통신규제당국이 공조하는 독일의 예가 시사하듯이, 관련시장 확정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쌓아온 자료들과 노하우들을 공유할

22) 차성민,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 관련시장 획정, 공정경쟁 제98호, 한국공정거래협회, 2003. 10., 23면 이하.

23) 2004. 6. 22. 발효.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조방안도 좋은 방안이 된다고 보아짐²⁴⁾

4) 서비스품질수준협약의 법적 근거마련

- 서비스품질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이란 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고객간의 합의를 통해 사전에 약속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의미함²⁵⁾
- BcN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향조정하여 약관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최저속도측정이 번거롭고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액수가 미미하여, 실효성 있는 고품질서비스 보장수단이 되지 못함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이용약관에 관한 규정의 한 내용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삽입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서 사용되는 이용약관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품질, 수준, 측정과 보고방법 및 분쟁시 해결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²⁶⁾

5)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의 근거규정 마련

- 현재 통신사업자가 TP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도, 방송사업이 불가하므로 신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24)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법령 체계정비방안 연구, 전게서, 240면.

25) 이병윤, SLA 표준화동향, IT Standard Weekly 제33호, 2004. 8. 16.

26) 한국법제연구원, 전게서, 248면.

○ 해외 사례(일본의 경우)

- 일본의 경우에도 위성 DMB와 같은 디지털융합서비스가, 일본의 IT산업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전략적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방송콘텐츠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이해관계당사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임
- 또한 일본은 2001년에 이미 디지털융합서비스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제정하여 통신사업자도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IP-TV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통신사업자가 방송서비스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는 케이블사업자와 같은 방송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불공평한 것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임
- 또한 일본의 경우 2003년 7월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통신·방송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터넷과 방송, 통신의 구분이 무너지가는 디지털융합의 추세에 대비해 왔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과 방송을 엄격히 구별하여왔고, 과거 통신설비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를 구분하였던 일본의 분류체계를 차용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여 왔음
- 이에 따라, 과거 미미한 존재였던 별정통신사업분야가 매우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의 분류체계 또한 현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개정방향

- 단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에서 '전기통신역무' 용어대신 '통신망을 이용한 역무'로 수정하여,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가 데이터방송을 종일방송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IP-TV를 제도권내 수용이 가능해 짐
- 추후 지상파 양방향 STB 보급 및 공동채널에서의 T-Commerce 제한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장기적으로는 미국 1996년 개정통신법과 같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전송서비스(basic or telecommunications service)와 정보서비스(enhanced or information service)로 구분하여,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모든 응용서비스를 정보 서비스에 포함시켜 규제하도록 함²⁷⁾

6) 원격의료서비스

- 현행 법상 원격의료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 원격진료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문화 필요
- 원격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가 과거 허가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식약청에서 의료기기로 보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됨
 - HW와 SW를 일체로 보아 사전허가를 고집함으로써 실무상 PACS 판매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우를 범하였으나, 2004년 기업애로해소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음²⁸⁾
 - 특히 과거 HW중심의 규제틀에 의하면, PACS SW 판매자 뿐 아니라, PACS

27) Peter W. Huber, Federal Telecommunications Law 2nd Ed., Aspen Law & Business, 1999, pp.1077~1080

28) 주지홍 외, 의료정보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비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pp.37~39. 원격의료산업에 있어서 lynch pin 역할을 하는 PACS의 경우, 미국의 경우 과거 일체형 허가방식을 고집하다가 소송에서 패한 후 분리허가로 바뀌었음. 즉, 범용 HW를 사용하면서 고유 SW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리 허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변화를 받아들여 분리허가로 변경될 예정임.

- 를 사용하여 원격의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의 책임여부가 문제됨
- 현재 미국에서는 이에 관해 의료기기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아 FDA가 관장할 것인지, 아니면 원격의료에 있어서 통신프로토콜이 중요하므로 FCC가 관장할 것인지 논의중에 있음
 - 원격의료에 있어서 통신프로토콜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관련된 사항은 통신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원격진료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문화
- 현행 의료법의 원격의료 규정이 원격의료의 범위를 단순히 '의료지식이나 기술의 지원'으로 국한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음
 - 말레이시아나 미국 등의 원격의료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격의료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의료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원격의료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큼
 - 따라서 원격의료의 범위는 기술적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다양한 원격의료 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함
 - 원격의료의 개념을 확대함에 있어서는 의사 등이 원격지에 있는 의사 등에 대하여 행하는 원격의료와 직접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행하는 원격의료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즉, 원격의료를 i)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과 현지의 의료인 사이의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의 지원행위, 그리고 ii)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직접적 의료행위로 구분가능 함
 - 현행법상 전자의 경우에만 가능
 - 후자의 경우와 같이 의사가 원격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간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원격의료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²⁹⁾

29) 현재 무의촌의 경우 간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격의료를 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불법의료행위에 해당

– 다음과 같이 별도 조항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개정안

제30조의2(원격의료의 범위 등)

② 의료인(위와 같음)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진단을 내리고 처방 등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³⁰⁾

○ 원격진료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문화

– 원격의료를 상기와 같이 확대규정할 경우에는, 제30조의 2(원격의료) 제4항을 개정하거나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 불구하고, 현지 의료행위 종사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둬

– 단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통신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통신회사의 면책규정을 두도록 함

– 그러나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기술상의 장애로 인해 의료과오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가입의무를 강제화하고, 이를 의료보험수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됨. 이러한 현지의료보조인을 통한 원격의료의 법제화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현지의료보조인의 자격이나 능력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을 의사가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 둘째, IT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촉진과 같은 경우를 대체할 만큼 아직 IT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이를 현지 간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므로 원격지 의사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기에는 위험이 많다는 점을 들고 있음. 그러나 직접 대면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촉진과 같은 경우에도 원격진료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감경을 통해 의사의 책임을 완화시킨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또한 원격진료의 경우, 원격지의사가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한다면 현지의료보조인이 자신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환자보호를 기할 수 있음. 통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통신회사에 책임을 물을 경우, 기술특성상 오류가 없을 수 없음을 감안하여 일정한 행위의무(절차상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통신회사가 이행한다면 면책하도록 하여 원격진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30) 상계서, pp.119~120.

- 또한 원격진료수가 등 원격진료요양 급여기준을 명문화하여 적정 진료수가를 보장토록 함

7) 기타 건축 및 홈네트워크 분야³¹⁾

- 구내통신시설기준을 BcN에 맞도록 개정함
 - 현재 Apt 지역은 정보통신인증제도를 통하여 FTTH 등 BcN 가입자망 구축이 용이한 형태로 통신시설이 구축되고 있음
 - 그러나 기타 상업용건물이나 일반 주택지역의 구내통신구축은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추세에 따르지 못하고 있음
 - 향후 통신발전속도를 감안하여, 구내통신시설 인증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맞는 형태로 구내통신 설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정
- 홈네트워크 인증제도 미시행
 - 정보통신부가 관장하는 인증제도 시행
 - 현재 주거용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지외 업무용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0㎡이상인 건물에 대해 등급을 구분하여 엠블럼 및 인증명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의 등급보다 수준을 높이고, 인증대상 건물의 범위도 확대하여 BcN 망을 통해 홈네트워킹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
- 아파트 분양시장 플러스 옵션제 시행
 - 홈네트워크 장비 및 시스템은 플러스옵션제에서 제외토록 함
- 서민주택에 대한 홈네트워크 지원규정 미비

31) 김종보 외, 광대역통합망 구축활성화를 위한 건축행정상의 개선사항 및 세제상의 지원방안, 2004. 12. 20. 이슈리포트 참조.

- 주공에서 시행하는 국민주택에 홈네트워크 시스템설치시 정책자금 지원토
록 함
- 홈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정보가전기기 보급활성화 지원기능 미비
 - 특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혜택 부여
- BcN이 활성화되는 성숙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초고속정보통신인증
제도 또는 주택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설비구축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도록 함

8) 통신시설 도로점용 허가를 제도적으로 지원

- BcN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필수적임
 - 통신시설이 일반 주택지역으로 전진 배치될 필요성이 증대됨
 - 통신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 점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 단독주택지역에서의 광케이블 인입을 위한 전주(pole)설치 허가 필요
- 현재는 도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통신시설설치 점용허
가를 내주지 않고 있음
 - 도로법 제41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에 관한 규정³²⁾과 관련되어, 시
행령에 통신시설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 또한 예외사항으로서 기타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통신시
설설치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거절할
수 없게 하여, 통신사업자의 BcN 구축을 위한 애로사항 해결

32) 도로법 제41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의 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교통이 현저히 복주하거나
특히 폭원이 협소한 도로에 있어서 교통상 부득이한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구체적 개정방향

- BcN 관련하여 여러 가지 관련법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법 제정 및 구체적 실행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화 촉진기본법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정보화 초기에 요구되었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기반의 조성은 이미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정책방향은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및 통합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이나 통신망에 관한 내용을 모두 법에 담아낸다는 것은 잦은 개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문리적인 해석을 하게 되어 법의 경직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보통신과 같은 첨단 분야와 관련된 법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제시해 주어야 함
 -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함

- 제1장 총칙
 - (1) 법의 목적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와 관련해서 정보통신의 고도화 및 통합화를 바탕으로 컴퓨터·통신·방송 등 모든 정보통신기기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광대역통합망

구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 그러나 정보화촉진기본법은 범명에서 나타난 봐와 같이 우리 행정부가 정보화 정책을 추진함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이지, 특정 기간에 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정책과제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에서 규정한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에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정보화촉진기본법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BcN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법제도 내용을 기본법에 직접 포함시키는 방법보다는, 기본법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 정보화촉진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BcN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 법제도 내용들은 별도의 하위법을 신설하여 거기서 법제화 하는 방안이 있음

(2) 제3조(정의) 규정

- 제3조 5호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으로 변경하여 정의를 수정하거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라는 용어를 유지한 채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을 추가로 정의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은 장기적으로는 BcN으로 발전·대체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어도 수 년 동안은 계속 운영·관리되어야 할 개념이며, 또한 동법 제26조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다루고 있는데,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용활성화’는 계속 진행 중 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으로 변경하여 정의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음
- 또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라는 용어를 유지한 채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을 추가로 정의하자는 의견에도, 정보통신영역의 발전된 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개발하여 이에 대하여 정의하고 그 개념에 발전되는

기술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음

- 그러나 IT기술발전에 따른 시장융합현상에 따라, IT 패러다임의 변화 및 규제외 틀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시점에서,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게 “초고속정보통신기반”용어를,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으로 용어 수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사려됨
- 다만 보수적인 입법론적 시각에서는 앞서가지 않고 시대 흐름에 뒤따라가는 것이 위험부담이 적다고 할 것이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시장에서는 IT관련 법제가 IT산업성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고 성장의 하부구조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법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광대역통합망으로의 용어변경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3) 제3조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 동조 3호의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에 『정보통신서비스품질보장』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함
- 정보통신도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이는 업계에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됨

○ 제2장 정보화촉진 등을 위한 계획수립과 추진체계

(1) 개관

- 제2장의 경우 i) 광대역망 표준모델 개발, ii) 광대역 통합서비스 개발 보급 추진, iii) 품질보장망 구축, iv) 통합망 보안기능 고도화, v) 유선 가입자 망의 광대역화, vi) 첨단 연구개발망의 구축과 운영, vii) 전산원 관련 내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이중 전산원과 통합망 보안기능 고도화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제5조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제6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 제5조 3항 1호(광대역 통합서비스 개발 보급 추진)
 - 광의로 볼 경우, 제5조 3항 1호의 '정보화촉진 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에서 정보화촉진의 개념에 광대역 통합서비스의 개발과 보급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별다른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의견처럼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을 추가하여 정의한다면, 이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광대역 통합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비롯한 정보화촉진 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이라는 형태로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3) 제5조 3항 8호(광대역 표준모델 개발과 품질보장망 구축)
 - 동법 제5조 3항 8을 개정하여 "정보의 공동활용, 정보통신 표준화 및 통신사업자의 품질보장망 구축의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 표준모델 개발은 이미 정보통신 표준화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문화 작업이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4) 제5조 3항 12호(첨단 연구개발망의 구축과 운영)
 -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제5조 3항의 12에 첨단 연구개발망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함

○ 시행령 제3조의 1(첨단 연구개발망의 구축·운영 등)

정부는 첨단 연구 개발망 구축·운영을 통해 민·관 공동으로 새로운 장비, 기술, 서비스, 콘텐츠 등의 수요를 (선도적은 삭제) 창출하고, 핵심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

1. 첨단연구개발망 구성
 2.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 광대역통합망 연구개발 지원
 4.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 핵심 시범사업 추진
- 아울러 시행령 제3조의 1을 신설함

(5) 제10조

- 제10조 3항 2호를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구축, 관리 및 운용의 지원”으로 변경
-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공공기관의 광대역통신망의 구축과 관리 및 운용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보통신기술개발에 따른 첨단통신망의 구축·관리 및 운용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있음
- 제10조 8항을 신설하여 “첨단 연구개발망의 개발·구축·운영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수 있음
- 광대역통합망 및 초고속인터넷의 개념을 협의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첨단 연구개발망”에 관련된 근거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6) 제14조 제1항

- 통합망 보안기능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별다른 개정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됨
-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이에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와 같은 내용을 추가시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나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정보공개 가능성을 낮추게 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공익을 위하여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찰해보아야 함

(7) 제16조의 2(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

- 동 조항을 개정하여 광대역통합망 및 초고속인터넷의 개념을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광대역통합망과 같은 첨단기술을 보편적 역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음

- 즉 첨단기술과 보편적 역무는 서로 융합될 수 없는 개념으로 판단됨
- 초고속인터넷이나 광대역통합망에 대하여도 미국의 자료를 보면 우리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를 모든 국민이 따라가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 초고속인터넷 및 광대역통합망 개념을 보편적 역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제3장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1) 제18조

-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래 구축된 통신망 및 새로이 구축될 BcN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별도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종래 정부의 역할은 통신망의 구축 내지 고도화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현재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탈피하여 정보통신의 통합화·융합화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함
- 그러나 정보통신의 통합화·융합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여야 한다면 이를 제2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이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동 조항과 관련해서는 동법 제2조의 2를 개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임
- ‘18조의2’ 등의 형태로 BcN 기본 계획에 포함된 ‘첨단연구개발망’에 대한 조문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첨단연구개발망’의 단어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산하 연구단체나 유관기관에서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제10조 8항을 신설하여 “첨단 연구개발망의 개발·구축·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앞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바

람직함

(2) 제19조

- 종래에는 정보통신 그 자체를 중점으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현재와 미래에는 정보통신은 하나의 도구개념이나 매개체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따라서 미래에는 정보통신을 근간으로 하는 각종 새로운 융합·통합기술들이 산업상 중요한 부가가치기술로 부상하게 되고 실제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이러한 점에 비추어 단순한 응용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융합기술에까지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서비스만에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2조의 용어 정의에 따라 대상을 “정보통신”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제21조의2 신설에 관하여

-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통신관련기술의 연구 및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기반인 산업단지의 조성에 대응하는 연구개발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제21조의2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 부분도 동법 제2조의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일원화하여 체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함
- 즉 제2조의2에서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항 또는 호를 이용하여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는 역할을 모두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제4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1) 제26조(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

- 정보통신기반의 1단계 구축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진 내지 향상이 요구됨

-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따라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지속적인 향상을 추진하여 정보화선진국을 유지해나가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 부분은 총칙과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결론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즉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으로 변경하고 정의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4장의 관련 용어도 전부 수정해야 할 것임
- 또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과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을 각각 규정하거나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4장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함

(2) 제28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 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에 관한 동 조항은 BcN 기본계획의 ‘전자정부통신망’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제32조 (초고속정보통신망확충을 위한 협조 등)

-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도 다양한 행정기관이나 민간부분의 협조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협력의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대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의무가 있으며, 제32조 제3항의 조정결과에 대해 1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결과에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조정결과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보상하고 전기통신시설 설치를 위한 관로 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

IV. 시사점

- 융합서비스 규제완화
 - IT성장률 둔화 및 차세대 성장동력의 동인이 되는 신서비스 부재로 국내통신 시장은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통신사업자들이 융합추세에 대응하여 개발·제공하고 있는 경계영역상의 신서비스는 국내 IT시장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성장엔진임
 - 초창기 보호육성이 필요한 융합서비스에 대해 통신법령과 방송법령의 중복 및 이중규제로 인하여 신규서비스 개발이 위축되고, 적극적인 투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BcN 관련 융합서비스에 관해서는 방송위의 규제 신설 또는 새로운 통신·방송융합서비스사업법 제정으로 인해 이중규제 내지 규제부담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 및 사업자 편익증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지원
 - 이미 통신사업자 분류기준 재편성 및 사업허가정책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발생시 책임부담을 우려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임
 - 최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규제의 추세가 변화되고 있고, 일부 사안의 경우 입증책임도 사업자에서 통신위원회로 전가되는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통신환경조성에 정부가 애쓰고 있음
 - 정부의 시장진입완화(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통신사업자의 방송영역 진입 완화)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공정경쟁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합판매 규제 완화, 이중망간 상호접속수용)에 관한 정책추진에 대해, 새로운 시장개척 및 신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IT산업 육성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음